

해외사업 협력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

해외건설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는 정부의 신북방 및 신남방 등의 해외 유망시장 확대 정책에 따른 해외사업 발굴과 추진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본 업무협약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해외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지원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에 있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 위함이다.

제2조 (업무협력의 범위)

양 기관은 다음 각호사항에 대해 상호 지원, 협력한다.

1. 개발 및 타당성조사, 사업관리, 유지관리 등의 사업 발굴 및 추진
2. 직원 파견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
3. 1, 2호와 관련한 토론회, 세미나, 워크숍 개최
4.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 및 해외 조사단 파견
5.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공동 추진
6. 기타 상호 관심사에 관한 협업

제3조 (실무협의회)

양 기관은 본 협약 이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호 협의 하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제4조 (비밀유지)

각 기관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, 특정 투자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에 앞서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. 본 협약의 해지 이후에는 본 조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.

제5조 (협약의 효력, 내용변경 및 해지)

1.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. 단, 기간만료 3개월 전에 당사자 일방의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. 이러한 종료는 본 협약에 따른 협력 활동 및 종료 시점에 완성되지 않은 사업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.
2. 본 협약은 정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양 기관 대표들의 상호합의에 의거 전부 혹은 그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상호합의는 서면으로 교환한다.
3. 일방 기관이 본 협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상대방 기관에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6조 (비용 부담)

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상호 합의에 따라 부담한다.

제7조 (기 타)

1. 양 기관은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며 상대 기관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2.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, 제4조, 제5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0년 7월 10일



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

회장 이 건 기

이 건 기



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

사장 변 창 흠

변 창 흠